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제 2 3 7 회 임 시 회[2020.4.21.(화) 10:00]

검 토 보 고 서



복지도시위원회

목 차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1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최종익〉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0-23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년 4월 10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4월 13일

3. 제안이유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존치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40조의2)

- "2020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나. 입법예고 : 2020. 2. 6. ~ 2. 26. (제출된 의견 없음)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별첨: 사유서)

라. 합 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합)

6. 검토의견

가. 제안경위 및 개정취지

-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0.4.10.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3호로 2020.4.13.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개정취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자 하였음.

나. 주요 검토의견

(1) 조례개정 필요성 검토

○ 본 전은 당초 상위법인「여성발전기본법」을 근간으로 기금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5.3.25.「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5.7.1.자로 같은 법 제명을「양성 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등 전부개정 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¹)·명시하는 등 일부개정(2015.9.24.)을 통하여 그동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으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임.

〈표 1〉마포구 양성평등기금 조성 현황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1 2017 2018 총액 21 5 3 5 5 1 1 1

(단위: 억 원, 2020.4.10.기준)

¹⁾ **제4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24]

○ 또한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설치 시 위촉직 위원 중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정참여확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네트워크 및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통계 등 다양한 정책을 자체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대한 기금 사용²)총액은 최근 5년간 2억 4662만원으로 연평균 4932만원을 집행하고 21억 3804만 1천원이 익년도기금으로 이월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이 유지됨에 따라 향후에도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음.

〈표 2〉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집행 현황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자수입(a)	73,341	44,698	63,849	45,212	39,258
집 행 액(b)	60,571	44,620	57,051	46,394	37,984
집행비율(b/a)	82.5	99.8	89.3	102.6	96.7
기금잔액	1,929,036	1,929,114	1,937,949	2,036,767	2,138,041

(단위: 천원, %)

(표1,2 출처: 마포구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2) 조례조문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40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³)(기금의 존속기한)에서 정한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의 규정에도 부합하다 판단됨.

²⁾ **제4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5.9.24.> 1. ~ 6.(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³⁾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u>그 기간은 5년을</u> <u>초과할 수 없다</u>.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3) 종합의견

○ 이상의 개정 조례안은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및「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⁴)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바,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됨.

⁴⁾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5. 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추계 요약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은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 연장하고자 함이므로, 그 의안의 시행에 비용발생 또는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음.

4. 작성자 :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조성원 (☎ 3153-8922)